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1. 18.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일·숙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, 법령개정에 따른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일·숙직근무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제4항 신설)
- 나.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(안 제22조제6호)

3. 관계법령
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5항(종전의 제4항)중 “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”를 “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”로 한다.

④ 일·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”를 “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”로 하고, 동조제6호중 “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”를 “특별훈련대상자 선발에 응할 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일·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⑤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22조(공가)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 1.~5.(생략)</p> <p>6.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<u>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</u></p> <p>7.~8. (생략)</p>	<p>제22조(공가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</u>-----</p> <p>----- 1.~5.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-----<u>특별훈련대상자 선발에 응할 때</u></p> <p>7.~8. (현행과 같음)</p>